

아리아리! 정선
the mecca of arirang, jeongseon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

군 보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289호 2013. 3. 6. (수)

【공 고】

- 강원도 공고 제2013 - 149호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1
- 정선군 공고 제2013 - 154호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3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26, FAX:560-2592)

공 고

정선군 공고 제2013 - 149호

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

『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16조(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)에 의거 실태조사 및 현지 점검결과 소재 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2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3. 03. 4.

정 선 군 수

- 1. 공고의 명칭 :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
- 2. 공시송달 대상업체

순번	대부업 등록번호	상호	대표자	사업장 주소	비고
1	강원정선2010-대부18	대부오복전당사	최석주	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294-14호 사북선명오피스텔 1020호	소재지불명
2	강원정선2012-대부28	나이스대부전당사	손현욱	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1길 25	소재지불명

3. 공고기간 : 2013. 03. 11 ~ 2013. 04. 10 (30일간)

4.공시송달 내용

- 해당 대부업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정선군에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통지가 없을 경우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대부업(대부중개업) 등록이 취소되며, 같은법 제4조에 의거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(대부중개업) 등록이 제한됩니다.

○ 대부업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.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정선군청 지역경제과(☎ 560-215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정선군 공고 제2013 - 154호

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, 우리 군과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「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」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□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현황

연번	병(의)원명	전화번호	주 소	위탁예방접종
1	연세외과의원	033-563-7778	정선군.읍 봉양6길 14	Hib(뇌수막염)
2	(의)경천의료재단 한국병원	033-592-3121	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727	필수예방접종 11종

※ 의료기관에 따라 접종 가능한 백신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, 보호자 분께서는 방문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보건소(☎ 560-2116, 560-274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3. 03. 4.

정 선 군 수